

징 계 의 결 서

인적 사항	성 명	직 위	소 속
	이	책임	연구운영실
의 결 주 문	징계대상자에게 「불문(경고)」으로 의결함.		
	<p>미래창조과학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심문 결과, 국외출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 본인의 부주의가 다소 있었다고 판단하였음.</p> <p>금번 해외출장은 '예산부서장협의회'에서 결정 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적,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기관의 「국외출장지침」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2016.1.18.에 실시한 '국외여행 사전 자체평가' 및 같은 해 1.19., '2016년 출연(연) 예산담당 교육연수 추진의견' 내부결재 시 경영기획본부장 및 경영부원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 문서를 근거로 주관사 [(주)]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p>		
사 유	<p>국세청 흠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관사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교육, 연수, 훈련기획'으로 기재되었고, 타기관에서도 위 주관사를 통하여 유사한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주관사를 단순한 여행사와 다르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p> <p>아울러, 이와 유사한 국외출장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연구원 재직 중 산자부장관상 수상, 기획예산실장 4년 재직 기간 동안 신규예산 및 50명의 인력 확충을 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점, 2016.9.5. 과다산정액으로 지적받은 1,554,140원을 반납한 점, 처분요구서 접수 전인 2016.8.10.부로 이미 기획예산실장 직위를 박탈하고 다른 부서의 실무자로 배치하여 본인의 지위, 업무범위가 달라지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신분상·재정상 불이익한 선행처분을 한 점,</p> <p>또한, 징계대상자 본인이 최후진술에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금회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p>		

2016년 10월 18일

정계위원회 위원장 박



위원 김



위원 문



위원 박



위원 박



위원 양



위원 조

